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진출 의원)

의안 번호 244 발의연월일: 2021. 6. 1.

발 의 자: 김진출·정영수·이주한

홍병헌·여근순의원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지원단 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7조)
- 마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8조)
- 3. 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, 제17조의2
- 2)「재해구호법」제2조(정의), 제4조의2(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)
- 3) 「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제10조
- 4) 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」제10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복지정책과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・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・운영)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단안전대책본부(이하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"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 - 2.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 - 3. 자원봉사자의 규모
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 - 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- 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"자원봉사센터"라 한다)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.
-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지명할 수 있다.
-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
- 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- 3.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- 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 - 1. 상황총괄팀
 - 2. 모집·배치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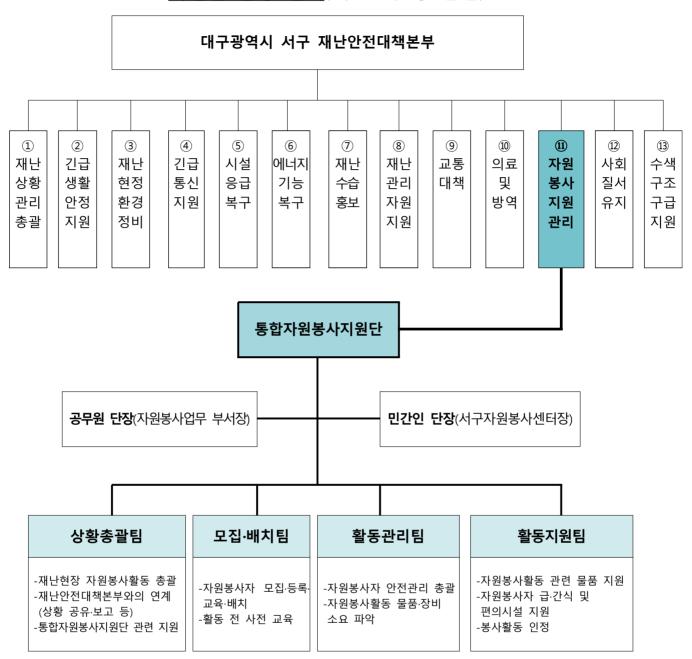
- 3. 활동관리팀
- 4. 활동지원팀
-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 -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 -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-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 -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지원단 실무팀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구	분	직 위	담 당 임 무
통합 자원 봉사 지원 단장	공무원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	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·재정 지원 사항 총괄 ▶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·지 원
	민간인	자원봉사센터장	›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관련 현장 총괄
실 무 팀	상황 총괄팀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팀장	 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·재정 지원 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 공유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, 행·재정 지원
	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팀원	▶ 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·재정 지원▶ 대책본부에 지원단 활동사항 보고▶ 지원단 홍보 및 활동 지원
	모집· 배치팀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현장 활동 총괄 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총괄
	활동 관리팀	자원봉사센터 팀원	개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·장비 관리 및 지원
	활동 지원팀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▶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

[※]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윈 및 담당 임무를 정한다.

【관계법령】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

- 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 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원봉사자의 모집 · 등록
- 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- 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-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.

「재해구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4. "구호지원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가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 - 나.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
- 다.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제4조의2(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)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.
- 1.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·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
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·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 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·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
- 4.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·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

- 5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, 중증장애인,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 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

「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

제10조(상황판단회의)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(이하 "본부장 등"이라 한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.
- 1. 대책본부 운영 여부
- 2.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
- 3. 재난상황의 심각성, 전개속도, 지속기간, 파급효과,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
 - 4.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 - 1.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
 - 2.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장
- 3.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
 - 4.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」